

의안번호	2126259
의 퇴 인	배진교의원
회 답 일	2024. 2. 8.
추 계 번호	23D5117

지역공공은행 설립에 관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지역공공은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,065억 5,000만원(연평균 413억 1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평균
지역공공은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 (안 제8조)	206,550	0	0	0	0	206,550	41,310

- 주: 1.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2. 본 추계 결과는 지역공공은행 설립 수, 각 은행의 자본금·출자비율 등에 대한 가정을 전제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지역별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출자 현황 등에 따라 재정소요액이 달라질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¹⁾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(자본금)	- 지역공공은행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름 1. 업무구역이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 한한다. 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인 경우: 250억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. 이 경우 시·도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한다. 2. 업무구역이 제주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(이하 “시·군·구”라 한다)인 경우: 50억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. 이 경우 시·군·구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한다.	의무규정
2	안 제26조(지방자치단체의 예금채무 원리금 지급)	- 지역공공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예금채무 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은행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함	의무규정
3	안 제33조제3항(지방자치단체의 지도·감독)	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공공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·평가하고, 그 결과를 지역공공은행의 은행감독위원회와 이사회에 알려야 함	의무규정

1) 안 제12조제4항에 따른 은행감독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에 구성되어 있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조직과 예산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, 재정수반요인에 포함하지 않음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8조(자본금)	○	-
3	안 제26조(지방자치단체의 예금채무 원리금 지급)	×	지방자치단체가 예금채무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, 지급불능이 될 지역공공은행 수, 해당 은행의 예금채무 원리금 총액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
4	안 제33조제3항(지방자치단체의 지도·감독)	×	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분석·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관련 위원회 구성, 전문기관 위탁 등의 분석·평가 방법을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지역공공은행이 설립될 지방자치단체의 수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,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(시·도)에 1개씩 설치된다고 가정함
 - 기초지방자치단체(시·군·구)에는 지역공공은행이 설립되지 않는다고 가정함
- 안 제8조에서 정한 자본금 상한금액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공공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,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공공은행의 자본금은 50억원으로 가정함
 - 자본금 중 시·도의 출자비율은 100분의 51으로 가정하고, 2026년에 전액 출자한다고 가정함
- 지역공공은행에 대한 감독업무 증가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증원은 없다고 가정함
-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과 법안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추계의 전제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역공공은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은 1개소당 127억 5,000만원이며,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공공은행에 대한 출자금은 25억 5,000만원임

- 출자금은 2026년에만 발생함

[표 2]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공공은행에 대한 출자금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(단위: 백만원)

		2026	2027	2028	2029	2030
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	자본금 총액(A)	25,000	-	-	-	-
	출자비율(B)	51%	-	-	-	-
	1개소당 출자금(C=A×B)	12,750	-	-	-	-
	개소(D)	16	-	-	-	-
	출자금 소계(E=C×D)	204,000	-	-	-	-
제주특별자치도의 출자금	자본금 총액(a)	5,000	-	-	-	-
	출자비율(b)	51%	-	-	-	-
	출자금 소계(c=a×b)	2,550	-	-	-	-
합 계		206,550	-	-	-	-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따라서 제정안에 따라 지역공공은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,065억 5,0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3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지역공공은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 (안 제8조)	206,550	0	0	0	0	206,55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- 본 추계 결과는 지역공공은행 설립 수, 각 은행의 자본금·출자비율 등에 대한 가정을 전제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지역별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출자 현황 등에 따라 재정소요액이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한예슬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한예슬	02-6788-4831	yeseulhan@nabo.go.kr